



# 교육감 규정

범주: 학생

번호: A-663

주제: 번역

페이지: 1 / 1

발행일: 2007/11/2

## 개정 사항 개요

### 개정 사항:

본 규정은 다음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 뉴욕시 교육청의 최신 구조를 반영하고
- “학부모 권리 및 의무(Bill of Parent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의 영문 및 번역본 및 통역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안내 내용을 검색 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한다.



# 교육감 규정

범주: 학생

번호: A-663

주제: 번역

페이지: 4 / 1

발행일: 2007/11/2

## 개요

본 규정은 2006년 6월 7일자 교육감 규정 A-663을 대체한다. 본 규정은 영어구사가 제한적인 학부모\*에게 자녀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실질적인 참여 및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 I.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 A. 적용언어(covered language)란 교육청의 조사 결과 영어 외의 언어를 구사하는 뉴욕시 거주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판명된 8개 주요언어를 의미한다.
- B. 주요언어(primary language)란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교육청이 결정한 언어를 의미한다.
- C. 통역(interpretation)이란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언어로 타인에게 구두상 전달되어 영어 사용자와 적용언어 사용자가 동시에 의사 교환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D. 번역(translation)이란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언어를 이용하여 글로 타인에게 전달되는 것으로서, 영어 사용자와 적용언어 사용자 사이의 문자를 통한 의사 소통을 의미한다.
- E. 언어 지원서비스(language assistance service)는 영어와 적용언어 간의 통역 및/또는 번역을 의미한다.

## II. 주요언어의 결정

- A. 학교는 학생 등록 후 30(삼십)일 이내에 (또는 이미 등록된 학생일 경우, 교육학습부에서 날짜와 절차를 선정) 모든 학생의 학부모가 사용하는 주요언어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 언어가 영어가 아니라면 학부모가 교육청과의 원활한 의사교환을 위해 언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B. 학교는 학부모가 사용하는 주요언어의 적절한 최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런 정보는 ATS와 학생의 비상연락카드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III. 언어 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

- A. 각 학교 및 각 부서는 교육청과의 원활한 의사 교환을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들에게 본 규정에 부합하는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B. 교육청은 본 규정에서 언급된 내용 이외의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본 규정에서 학부모란 단어가 사용될 때 이는 학생의 학부모, 보호자, 혹은 학생과 부모 또는 보호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학생 본인이 자립한 미성년자이거나 18세가 넘었다면 학생 본인을 의미함.



# 교육감 규정

범주: 학생

번호: **A-663**

주제: 번역

페이지: 4 / 2

발행일: 2007/11/2

C. 원한다면 학부모는 다른 성인 또는 친인척으로부터 언어 및 통역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IV. 학교의 언어 지원 평가

A. 각 학교는 종합교육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학교의 언어 지원 필요성은 다음을 포함한 본 규정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 a. 기존의 제공처 또는 통번역담당부를 통하여 시의 적절하게 번역본을 제공
  - b. 자녀 교육에 관한 주요 정보에 관해 교육청과 대화하기 위해 요청이 있을 경우,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통역 서비스를 그룹 회의 및 일대일 회의에서 시의 적절하게 제공
    - i. 언어 지원 방법
    - ii. 언어 지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원
    - iii. 아래 VII 항에 제시되어 있는 보고 요건 준수

## V. 번역을 요하는 문건

A. 교육청 중앙 부서에서 제작한 주요 문서

1. 교육청 중앙 부서에서는 뉴욕시 모든 학부모, 또는 거의 모든 학부모에게 배포되거나 인터넷으로 전달될 자녀 교육 관련 주요 문서를 판별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a. 등록, 입학 신청 및 선택
  - b. 기준 및 성취도 (예: 성적표의 기본 내용)
  - c.品行, 안전 및 징계
  - d.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 e. 전학 및 퇴학
2. 통번역담당부는 (a) 시의 적절하게 각 적용언어로 주요 문서를 번역하고 (b) 문서 발행 부서와 협의하여 번역본이 학교에 제공될 수 있게 한다.

B. 학생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

1. 학교는 주요언어가 적용언어인 학부모에게 개별 학생의 특정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의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번역될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나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a. 건강
  - b. 안전
  - c. 법률 또는 징계 조치 관련 사항



# 교육감 규정

범주: 학생

번호: **A-663**

주제: 번역

페이지: 4 / 3

발행일: 2007/11/2

d. 공립교육 수혜권리 또는 특수교육 배정, 영어학습학생 또는 비표준 학습 프로그램

C. 번역의 대안

통번역담당부, 학교, 또는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일시적으로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적용언어로 번역본을 제공하지 못 할 경우, 기타 지원과 더불어 영어 문서 앞장에 해당 적용언어로 학부모가 문서의 번역본을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문을 삽입해야 한다.

## VI. 통역 서비스

- A. 교육청은 학부모의 주요언어가 적용언어이며 학부모가 자녀 교육 관련 주요 내용에 관해 교육청과 대화하려고 할 때 정규 업무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의 적절한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B. 상황에 따라 통역 서비스는 학부모가 원하는 장소나 전화로 제공될 수 있다.
- C. 교육청 통번역담당부는 다음과 같은 뉴욕시 차원의 회의에 통역을 제공한다.
  - 1. 교육정책 토론 회의
  - 2. 뉴욕시 영어학습학생 학부모 회의
  - 3. 뉴욕시/지역교육 위원회 회의
  - 4. 교육청 중앙 부서에서 주관하는 기타 뉴욕시 차원의 학부모 회의
 회의 또는 행사에서 교육청은 참석자들이 주요 언어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 적용언어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 VII. 고지 요건

- A. 학교 및 각 부서는 지원 서비스를 요청한 주요언어가 적용언어인 학부모에게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에 관한 권리를 설명한 “학부모 권리 및 의무 (Bill of Parent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사본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해당 문서의 적용언어 번역본들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http://schools.nyc.gov/Parents/NewsInformation/BillofRights.htm>
- B. 학교 및 각 부서는 통역서비스 제공 사실을 알리는 게시물을 모든 적용언어 또는 해당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적용언어로 번역하여 눈에 잘 띄는 곳이나 학교 정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적용언어로 번역된 게시물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http://schools.nyc.gov/Offices/Translation/TipsandResources/Default.htm>
- C. 각 학교의 안전 계획은 언어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학부모가 언어 장벽만을 이유로 학교의 행정 사무실에 연락을 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 D. 학부모의 10% 이상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주요 언어가 영어나 적용언어가 아닐 경우, 학교는 본 조항에 준하여 통번역담당부로부터 학부모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된 필요한 지시문과 양식을 제공받아 이를 게시하고 배부한다.



# 교육감 규정

범주: 학생

번호: **A-663**

주제: 번역

페이지: 4 / 4

발행일: 2007/11/2

E. 교육청의 웹사이트에 통번역 서비스에 관한 학부모의 권리와 서비스 요청 방법을 각 적용언어로 게시한다.

## VIII. 언어 지원 서비스 요청 방법

- A. 학교 및 교육청 각 부서는 본 규정에 명시된 통역 및 번역 조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통번역담당부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절차를 따른다.
- B. 언어 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인근 학교 사무실이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연락한다.
- C.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제공 관련 문의사항은 통번역담당부에 연락한다.

## IX. 기록보존 요건

통번역담당부는 부서가 제공하는 모든 언어 지원 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적용언어로 번역된 특정 문서의 수와 해당 문서의 내용
-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 회의의 횟수와 언어
- 언어 지원 서비스의 연간 예산
-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청의 정규직원 수
- 전화 통역 서비스 제공 횟수와 제공된 언어

## X. 질문

통번역 서비스 요청에 관한 질문은 아래로 연락한다:

<p>전화: 718-752-7373</p>	<p>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Unit          NYC Department of Education          45-18 Court Square- 2<sup>nd</sup> Floor          Long Island City, New York 11101          이메일: <a href="mailto:translations@schools.nyc.gov">translations@schools.nyc.gov</a>  <a href="http://schools.nyc.gov/offices/translation">http://schools.nyc.gov/offices/translation</a></p>	<p>팩스: 718-752-7390</p>
-----------------------------	---	-----------------------------